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0호 2023. 8. 31.(목요일)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63호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 3
○ 하동군 규칙 제1264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7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14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10
○ 하동군 고시 제2023-149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허가 고시 • • • • • • • • • • • 14
○ 하동군 고시 제2023-150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 • • • • • • • • • • • • • • • • • 15
○ 하동군 고시 제2023-15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 • • • • • • • • • • • • • 18
○ 하동군 고시 제2023-153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 • • • • • • • • • • • • • • 19
○ 하동군 고시 제2023-15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 • • • • • • • • • • • 20
○ 하동군 고시 제2023-155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 24
○ 하동군 고시 제2023-156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 25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099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하동군 공고 제2023-1100호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1
○ 하동군 공고 제2023-1113호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36
○ 하동군 공고 제2023-1130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47
○ 하동군 공고 제2023-1131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52
○ 하동군 공고 제2023-1135호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58
○ 하동군 공고 제2023-1136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외 1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65
○ 하동군 공고 제2023-1161호 하동군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2
○ 하동군 공고 제2023-1163호 하동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 • • 84
○ 하동군 공고 제2023-1168호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6
○ 하동군 공고 제2023-1180호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11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117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주민대피명령 공고 • • • • • • • 135
○ 하동군 공고 제2023-112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주민대피명령 해제 공고 • • • • • 136
○ 하동군 금남면 공고 제2023-27호 2023년 금남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채용 공고 • • 137

회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규칙 제 1263 호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남/여)	생 년 월 일	
	주 소		영 업 장 소	
	업소명	(전화번호:)		
적발일시			행정처분일자	
감경사유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	신청인 인적사항			업소명	적발 일시	감 경 대 상	감 경 처분일	감경금액 (요율)	비고
	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제3조(감경대상)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만65세 이상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2. 65세 ---------- 19세 ----------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규칙 제 1264 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table>
<tr><td colspan="7">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td><td>처리기간
3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d>상 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여)</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8">신 청
내 용</td><td>공 사 명</td><td colspan="6"></td></tr>
<tr><td>사용장소</td><td colspan="6"></td></tr>
<tr><td>사용기간</td><td colspan="6"></td></tr>
<tr><td>사용목적</td><td colspan="6"></td></tr>
<tr><td>사 용 수</td><td colspan="6">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td></tr>
<tr><td>배출시설</td><td colspan="6"></td></tr>
<tr><td>배 출 량</td><td>일평균</td><td colspan="2">㎥</td><td>월평균</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td></tr>
<tr><td colspan="8">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td></tr>
</table>

[별지 제9호서식]

<table>
<tr><td colspan="6">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td><td>처리기간
10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d>상 호</td><td></td></tr>
<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여)</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5">신 청
내 용</td><td>점용장소</td><td colspan="5"></td></tr>
<tr><td>점용기간</td><td colspan="5"></td></tr>
<tr><td>점용목적</td><td colspan="5"></td></tr>
<tr><td>점용면적</td><td colspan="5"></td></tr>
<tr><td>공사내용</td><td colspan="5"></td></tr>
</table>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하동군 고시 제2023 - 146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31.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282-6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3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69-9 외 29건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비고
별 지 참 조(30건)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7. 3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693-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282-6	20230731	들과 포구가 있던 지명으로 들포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98-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626-14	20230731	세종태실지 명칭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270-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63-39	20230731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업무구분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비고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69-9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69-7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69-5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69-3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66-6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57-9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57-6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57-23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57-18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57-17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57-16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57-14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57-13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57-12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057-11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81-39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2길 37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2길 27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2길 21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2길 17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선장길 64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1길 124-1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1길 122-8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1길 120-11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1길 120-1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36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구통길 210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91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61-5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마방길 13-1	20230731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하동군 고시 제2023-14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8. 01.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35
2. 허가연월일 : 2023. 8. 1.
3. 점·사용의 목적 : 공유수면 점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351-15번지 외 15필지, 1182㎡
5. 점·사용의 기간 : 2023.08.01. ~ 2028.07.31.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에너지

하동군 고시 제2023-150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8. 02.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 재 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4833	35-05-03.5180	127-48-32.5590	중부	276747.83	273781.17	108.92	횡천면 학리 1157	2023.07.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34	35-05-02.9373	127-48-30.4873	중부	276729.51	273728.83	99.048	횡천면 학리 1157	2023.07.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35	35-05-02.2696	127-48-28.1973	중부	276708.46	273670.98	87.213	횡천면 학리 417	2023.07.0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36	35-02-50.8163	127-47-16.0132	중부	272642.68	271874.37	5.533	고전면 신월리 967-1	2023.07.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37	35-02-46.9174	127-47-16.3768	중부	272522.59	271884.53	6.160	고전면 신월리 985	2023.07.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38	35-02-43.2911	127-47-16.0456	중부	272410.77	271877.02	7.568	고전면 신월리 978-2	2023.07.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39	35-01-46.2899	127-54-05.5347	중부	270741.95	282271.30	3.374	진교면 진교리 827-39	2023.07.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40	35-01-47.0888	127-54-07.9023	중부	270767.12	282331.09	2.697	진교면 진교리 426-3	2023.07.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41	35-01-49.2625	127-54-04.2898	중부	270833.28	282238.91	3.959	진교면 진교리 827-39	2023.07.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42	35-04-43.7575	127-50-14.3552	중부	276160.14	276365.05	77.386	양보면 감당리 126-2	2023.07.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43	35-04-45.8660	127-50-15.9543	중부	276225.46	276405.02	80.627	양보면 감당리 125-1	2023.07.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44	35-04-46.0867	127-50-17.5507	중부	276232.61	276445.40	82.693	양보면 감당리 1154	2023.07.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45	35-02-23.2101	127-53-46.3652	중부	271875.39	281775.13	17.113	진교면 진교리 566-2	2023.07.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46	35-02-23.2216	127-53-46.3652	중부	271874.62	281649.94	20.144	진교면 진교리 566-2	2023.07.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47	35-02-19.2514	127-53-41.4398	중부	271752.28	281651.39	20.963	진교면 진교리 590-1	2023.07.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48	35-01-58.5719	127-54-02.1258	중부	271119.68	282181.47	7.520	진교면 진교리 491	2023.07.10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49	35-01-56.6294	127-53-55.7695	중부	271058.36	282020.88	17.071	진교면 진교리 667-7	2023.07.10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50	35-01-59.1124	127-53-54.2375	중부	271134.54	281981.36	14.563	진교면 진교리 828-1	2023.07.10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51	35-02-02.0999	127-54-00.3951	중부	271228.02	282136.61	8.652	진교면 진교리 472-41	2023.07.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52	35-02-06.2722	127-53-58.2255	중부	271356.10	282080.46	10.734	진교면 진교리 469-6	2023.07.10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53	35-10-58.5012	127-38-07.5582	중부	287573.04	257878.52	130.175	화개면 덕은리 515	2023.07.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54	35-11-00.2457	127-38-07.7762	중부	287626.84	257883.69	133.447	화개면 덕은리 산106	2023.07.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55	35-11-01.5741	127-38-05.2569	중부	287667.37	257819.69	121.241	화개면 덕은리 524-1	2023.07.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56	35-17-05.6143	127-37-13.6339	중부	298878.34	256443.45	516.558	화개면 범왕리 1920	2023.07.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57	35-17-03.0858	127-37-13.4924	중부	298824.21	256440.22	510.705	화개면 범왕리 1922	2023.07.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58	35-17-04.4949	127-37-11.3971	중부	298843.49	256387.15	506.069	화개면 범왕리 1946	2023.07.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59	35-11-35.7103	127-42-40.8852	중부	288766.60	264785.99	28.148	악양면 동매리 산56-6	2023.07.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60	35-11-34.4515	127-42-41.7868	중부	288727.97	264809.08	28.149	악양면 동매리 600-4	2023.07.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61	35-11-33.4483	127-42-41.8170	중부	288697.06	264810.07	28.149	악양면 동매리 655-3	2023.07.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62	35-11-31.6639	124-42-40.0007	중부	288641.74	264764.51	28.146	악양면 동매리 653	2023.07.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63	35-09-59.4606	127-39-01.4812	중부	285762.32	259254.77	49.200	화개면 부춘리 1053-1	2023.07.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64	35-09-57.8717	127-38-59.8754	중부	285713.09	259214.45	43.637	화개면 부춘리 1053-1	2023.07.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65	35-09-56.3453	127-38-57.4565	중부	285665.65	259153.54	36.138	화개면 부춘리 1061	2023.07.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66	35-02-16.2890	127-48-48.7240	중부	271597.47	274232.71	48.687	고전면 성천리 965-7	2023.07.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67	35-02-16.9318	127-48-51.4132	중부	271617.83	274300.71	47.446	고전면 성천리 1096-4	2023.07.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68	35-02-18.9677	127-48-52.9480	중부	271680.89	274339.10	48.737	고전면 성천리 1013-1	2023.07.2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69	35-05-39.9848	127-43-08.4534	중부	277808.74	265562.63	39.052	하동읍 화심리 1561-5	2023.07.26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70	35-05-39.8809	127-43-06.5697	중부	277805.19	265514.94	36.331	하동읍 화심리 산83-5	2023.07.26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71	35-05-37.3672	127-43-06.9960	중부	277727.80	265526.30	22.011	하동읍 화심리 1707	2023.07.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72	35-08-18.9171	127-45-30.4644	중부	282733.43	269122.38	202.679	적량면 서리 907-1	2023.07.26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73	35-08-16.3477	127-45-31.2028	중부	282654.39	269141.68	187.438	적량면 서리 540-2	2023.07.26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74	35-08-15.1220	127-45-31.9889	중부	282616.77	269161.87	182.794	적량면 서리 1765	2023.07.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75	35-11-26.4436	127-43-10.9832	중부	288486.50	265549.50	149.278	악양면 동매리 904-4	2023.07.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76	35-11-24.0786	127-43-12.0399	중부	288413.80	265576.77	145.628	악양면 동매리 174-2	2023.07.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877	35-11-22.7917	127-43-12.1823	중부	288374.17	265580.65	141.974	악양면 동매리 176-2	2023.07.27	철재	세계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고시 제2023-15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8. 0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07
2. 허가연월일 : 2023. 8. 3.
3. 점·사용의 목적 : 공유수면 점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65, 276㎡
5. 점·사용의 기간 : 2023.08.03. ~ 2028.08.02.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아이비디앤에스주식회사

하동군 고시 제2023 - 153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8일

하 동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내용

저수지명	위 치	규모				관리자	해제 사유	비고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삼박골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51-2	10	120	5	6	하동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우동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32	8	120	6	17	하동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2. 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건설과 농업기반 055-880-2512~5)

하동군 고시 제2023 - 154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16.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280-23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18-8 외 49건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비고
별 지 참 조(50건)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8.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347-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280-23	20230816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02-6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15	20230816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319-1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명천1길 14-17.	20230816	명천이라는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58-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14-9	20230816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642-5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185-2	20230816	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에서 유래된 정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16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451	20230816	사적 217호인 하동읍성앞을 지나가는 도로로서 문화재 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501-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180-5	20230816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206-1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58-5	20230816	섬이 크다하여 붙여진 섬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537-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숙재1길 139-16	20230816	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업무구분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18-8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2-12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6-18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6-16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6-14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6-12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6-10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6-4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4-2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4-1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4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2-28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2-26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2-25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22-11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4길 10-2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3길 4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2길 20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1길 5-8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1길 5-20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1길 5-18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동교2길 9-1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동교2길 8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동교1길 12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동교1길 11-9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동교1길11-27.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해량길 15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동교1길11-11.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동교1길 11-1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36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26-2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10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동공원길 20-8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4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흥룡길16-11.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45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43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23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21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56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해량길 22-1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해량길 19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해량길 26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40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하마길38-1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38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36-1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57-1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68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시장1길26-37.	20230816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하동군 고시 제2023-15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8.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01
2. 허가연월일 : 2023. 8. 17.
3. 점·사용의 목적 : 공유수면 점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727번지, 15㎡
5. 점·사용의 기간 : 2023.08.17. ~ 2028.08.16.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조성*

하동군 고시 제2023-15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8. 2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38
2. 허가연월일 : 2023. 8. 23.
3. 점·사용의 목적 : 공유수면 점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1340, 169㎡
5. 점·사용의 기간 : 2023.08.23. ~ 2028.08.22.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강종*

하동군 공고 제2023-1099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함

3. 주요 내용 :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하동군(경제기업과, 전화880-2204, FAX 880-2199, e-mail oddcherry1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 ---------- ---------- ----------.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동군 공고 제2023-1100호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 이유 :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하동군(경제기업과, 전화880-2204, FAX 880-2199, e-mail oddcherry1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 ---------- ---------- ----------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동군 공고 제2023 - 1113호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2. 제안 이유 : 국가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3. 주요 내용
   ○ [별표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현행화
   ○ 별지 서식 변경 및 추가

4. 의견 제출 : 이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하동군 기획행정국 민원과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민원과 (우편번호 : 52333)
- 전화 : 055-880-2124, FAX : 055-880-2078
- 이메일 : yjun0522@korea.kr

붙 임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규칙명** :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하동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미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검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확인·검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1,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제9조 관련)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제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지하시설물도(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을 말한다)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 공간정보	비공개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 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
	공개 제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 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 자료
	공 개 제 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 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 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 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 주소 안내도

※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제19조제1항 관련)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 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소속기관(단체)		직책	
신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계획 및 보안대책				
반납여부		반납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제19조제2항 관련)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검토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td><td>성 명/기관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전화 :)</td></tr>
<tr><td>소속기관(단체)</td><td colspan="2"></td><td>직 책</td><td></td></tr>
<tr><td>요청자료</td><td colspan="5"></td></tr>
<tr><td>사용목적
및
활용계획</td><td colspan="5"></td></tr>
<tr><td>관리계획
및
보안대책</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타당성 검토</td><td>검토자</td><td colspan="2"></td><td>제공여부</td><td>여 부</td></tr>
<tr><td>검토결과</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승인사항</td><td>제공자료</td><td colspan="4"></td></tr>
<tr><td>제공방법</td><td colspan="4"></td></tr>
<tr><td>제공기간</td><td colspan="4"></td></tr>
<tr><td>제공조건</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년 월 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able>

［별지 제6호서식］(제19조제4항 관련)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 명/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소속기관(단체)			직책	
신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계획 및 보안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제공조건				

본인은 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 법령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기관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 ----------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미리 ----------. ②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확인·검토----------.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6호서식----------.

하동군 공고 제2023 - 1130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민원서비스 중점 개선사항으로 별지 서식을 민원서식 평가기준에 맞는 큰글자 서식으로 개정하여 민원서비스 행정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지 제8호 서식(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 '큰글자 서식' 개편

나. 별지 제9호 서식(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 → '큰글자 서식' 개편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수도사업과, 전화 055-880-6895, 팩스 055-880-2599, 이메일 kbk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table>
<tr><td colspan="7">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td><td>처리기간
3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d>상 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여)</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8">신 청
내 용</td><td>공 사 명</td><td colspan="6"></td></tr>
<tr><td>사용장소</td><td colspan="6"></td></tr>
<tr><td>사용기간</td><td colspan="6"></td></tr>
<tr><td>사용목적</td><td colspan="6"></td></tr>
<tr><td>사 용 수</td><td colspan="6">상수도 · 공업용수 · 지하수 · 하천수 · 기타( )</td></tr>
<tr><td>배출시설</td><td colspan="6"></td></tr>
<tr><td>배 출 량</td><td>일평균</td><td colspan="2">㎥</td><td>월평균</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td></tr>
<tr><td colspan="8">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td></tr>
</table>

[별지 제9호서식]

<table>
<tr><td colspan="6">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td><td>처리기간
10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d>상 호</td><td></td></tr>
<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남/여)</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5">신 청
내 용</td><td>점용장소</td><td colspan="5"></td></tr>
<tr><td>점용기간</td><td colspan="5"></td></tr>
<tr><td>점용목적</td><td colspan="5"></td></tr>
<tr><td>점용면적</td><td colspan="5"></td></tr>
<tr><td>공사내용</td><td colspan="5"></td></tr>
</table>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하동군 공고 제2023 - 1131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실태조사

나.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료 지원

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하동군 경제기업과(참조 : 시장부서, 전화 055-880-2803, 팩스 055-880-2199, 이메일 dirt655@korea.kr)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임대료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사업장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을 것

② 지원 금액, 대상 업체 수,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

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임대료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사업장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을 것 ② 지원 금액, 대상 업체 수,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22조 (생 략)	제24조·제25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23 - 1135호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농업재해대책법」및「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재해복구비(재난지원금) 및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의 지원과 농업재해보험 확대 가입으로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이 증대되어 농업재해복구자금(융자금 이차보전)의 활용도가 낮아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폐지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하동군(참조 : 농업소득과, 전화 880-2422, FAX 880-2719, e-mai: dla1457@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및 현행조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현행 조례**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 복구를 위한 복구자금 지원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3. "농가"라 함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단위를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농작물 피해농가에게 융자하는 "농업재해 복구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기관"이라 함은 농업재해 복구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원칙) 농업재해 복구자금(이하 "복구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2장 융자금의 운영

제4조(자금의 조성) 복구자금은 일반회계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의2(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04.12.1., 개정 2008.10.30., 다른 조례개정 2011.1.7., 2016.1.1., 개정 2018.12.27.>

제5조(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 사업은 우박피해로 인한 농작물과 그 밖의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복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 농가 및 지역) ① 복구자금의 융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지역 농가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4.15.>

1. 농업재해 피해 농가로써 피해당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정밀조사결과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
2. 그 밖에 군수가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하여 복구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 농가 중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4.15.>

제7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① 융자 한도액은 농작물 피해면적 1ha기준 5,000천원으로 한다. 단 농가단위 피해면적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8.10.30.>

제8조(융자절차) ① 복구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재해 복구자금 지원신청서를 거주지역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농업재해복구자금 지원신청서의 재해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운영협의회의 협의내용 등을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개정 2013.4.10.>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일자 경과시까지 융자신청을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회로 하고, 융자금 상환은 사업실적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일시에 그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0.4.15., 2004.12.1.>

② 상환기간이 경과된 융자금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를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연장은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 받은 자가 타 시도·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3. 자금을 사업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는 업무담당과장, 관련읍면장, 관련농업인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10.30.,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6.1.1., 개정 2018.12.27.>

② 운영협의회의 회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10.30.,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6.1.1., 개정 2018.12.27.>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 농가
2. 피해복구사업의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기금운영의 모든 사항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해서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

제15조(특별회계의 설치) 복구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해당 자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업재해 복구자금 융자금에서 농업인이 연 1퍼센트 금리를 부담하고, 일반여신금리에 미달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개정 2004.12.1., 2008.10.30.>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다. <신설 2020.10.29.>

제1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19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8.12.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우박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 농업재해에 의한 융자금의 지원은 하동군 전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2023 - 1136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외 1건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외 1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나.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함

3. 주요 내용
   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별표3)
   나.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안 제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하동군(참조: 수도사업과, 전화 880-6895, FAX 880-2599, e-mail kbk53@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
2.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를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를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3 사용료 산정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를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② (생 략)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생 략)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물환경보전법」----------.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생 략) 1. 오수 발생량은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1. ----------「하수도법 시행령」----------

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별표3 수질하수도 사용료 □ 대상항목 : (생 략)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 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시행령 제29조제1호) ○ (생 략) ○ 폐수배출량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생 략)	별표3 수질하수도 사용료 □ 대상항목 : (현행과 같음) □ 사용료 산정기준 ○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 ----------.--------- ○ (현행과 같음)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 수질하수도사용료 : (현행과 같음)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생 략)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물환경보전법」----------. 7. (현행과 같음)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③ ~ ⑥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23-1161호

하동군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하동야생차박물관과 야생차치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 사항 개정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관리·운영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설 내용의 명확화
-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 기능(안 제4조)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 유물의 기증·구입(안 제15조)
- 박물관 운영위원회(안 제20조)
- 편의시설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안 제24조 ~ 제2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농산물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우편번호: 52321),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전화 : 055-880-2833, FAX : 055-880-6559
- 이메일 : wlsl8311@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동야생차박물관, 야생차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기타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차체험센터”란 체험관, 치유관 등 공원 내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가. 하동야생차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나. 야생차체험센터(이하 “체험센터”이라 한다)

1) 하동야생차체험관

2) 하동야생차치유관

3) 공원 내 일체의 시설

2. 위치

가. 하동야생차박물관: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나. 야생차체험센터

1) 하동야생차체험관: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2) 하동야생차치유관: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7

제4조(기능) ① 박물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시

2. 자료의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자료의 연구물 제작·배포 및 타박물관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

4.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증 및 기탁,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 소장품 보관·관리

6.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② 야생차체험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 야생차의 역사와 전통성 홍보

2. 하동 차 문화 발전을 위한 음다, 제다, 미용, 교육 등 체험프로그램 실시

3. 그 밖에 야생차체험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운영

제5조(운영관리) ①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등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미리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①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② 군수는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등 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야생차체험센터 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사용료, 체험시설 이용시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이용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3. 관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대관) ①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등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등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자료수집 및 관리

제13조(자료수집 대상) 자료수집 대상은 지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 보존 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것 중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수집) 군수는 자료를 구입·기증·기탁·위탁보관·대여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다만, 기탁의 경우에는 기탁 기간까지만 권한이 유효하다.

제15조(유물의 기증·구입) ①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증 받거나 구입하고자 할 경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따른다.

② 유물의 구입은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매(해외경매 포함)를 통한 구입 및 업무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자료 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요자료는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열람 등) 군수는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를 박물관 운영 및 자료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대여) ① 자료의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립・공립・사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

② 자료를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료 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하동야생차박물관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박물관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차(茶) 문화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연구·사회교육·홍보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편의시설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2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등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및 농특산물 판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5조(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일반 대중에게 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등의 하동차와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성 명
(단 체 명)</td><td></td><td>성 별</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 colspan="2">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사 용 목 적
(행 사 명)</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사 용 시 설</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사 용 인 원</td><td colspan="5">명</td></tr>
<tr><td colspan="2" rowspan="2">사 용 기 간
(일 시)</td><td>기 간</td><td colspan="4">~</td></tr>
<tr><td>일 시</td><td colspan="4">시 분 ~ 시 분</td></tr>
<tr><td colspan="2">변 경 사 항</td><td colspan="5"></td></tr>
</table>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야생차체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3 - 1163호

하동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하동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 하동군 비공무원 공쟁채용 규정

2. 제안 이유 : 하동군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채용 기준 및 절차 정립,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 등을 마련하여 채용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채용원칙, 채용공정성 관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4. 의견 제출 : 이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하동군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행정과
- 전화 : 055)880-2164, FAX : 055)880-2159
- 이메일 : salute@korea.kr

붙임 하동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별지서식 및 별표 포함) 등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지침)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하동군”이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면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근로자”라고 한다) 를 말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 교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제2조제2호의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읍면의 장을 말한다.

7. “관리부서”는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8. “사용부서”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며 업무상 지휘와 복무를 감독하는 각 부서를 말하여, 채용을 담당할 시 채용권자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9. “감사부서”란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된 과정의 위법·부당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감사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1.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읍면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하동군이 정하는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4조(채용 관련 심의기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공무직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2장 채용

제5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응시자격은 업무 특성에 따라 사용부서와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

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부서의 의무) ① 사용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등 이유로 별도의 자체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사용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 전에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③ 사용부서 채용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는 사항

④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3개월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6. 특별히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

⑤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사용부서를 제외한 1인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

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

간 그 사람을 하동군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2조(원서접수) ①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3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체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4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근로자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은 별표 1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1의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해당 근로

자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별도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다음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

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 위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채용점검위원회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그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별도의 자체 규정을 따른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0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의 내용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3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4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 4호의 서식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관련문서	○○○○과-0000호		
채용구분	[ ]공무직 [ ] 기간제	전형구분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서 약 서

본인은 OOOO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OO부(OO시)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으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별지 제4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표 2]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하동군 공고 제2023 - 1168호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제안 이유 :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과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본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
   - 존속기한 : 2023. 12. 31. → 2028. 12. 31.

4.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하동군(참조: 환경보호과 전화 055-880-2564, FAX 055-880-2569, 이메일 tmvkdl32@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8년 12월 31일----------.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하동군 공고 제2023-1180호

하동근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2. 제안 이유 : 기존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소속 근로자 및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 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등 전부개정

4. 의견 제출 : 이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교통과)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안전교통과
- 전화 : 055)880-7134, FAX : 055)880-2259
- 이메일 : en123@korea.kr

붙임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1부. 끝.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규칙명 :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지침)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하동군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하동군 소속 근로자 및 도급·용역·위탁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하동군에 근로를 제공하는 군 소속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 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규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수칙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군수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된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둔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군수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특별히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부분에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군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한 산업보건의를 선임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및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 감독관”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 명예 감독관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요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명예 감독관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③ 명예 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명예 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 추진상 조직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용자 위원

가. 대표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위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부서장

2. 근로자 위원

가. 대표위원: 근로자 대표

나. 위원: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담당자(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중 1명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동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① 군수는 근로자의 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활동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의 집행 등을 보장하고,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면을 통한 심의·의결로 대체되어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위원회 회의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차기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사항이 의결되지 않으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장
2. 안전・보건 대행업체의 장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4. 자격이 있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가
5.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회의결과 공지)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교육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5. 안전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 대상자, 교육 시기,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근로자: 분기별 3시간 이상
2. 현업업무 상시 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나목과 같다.

제24조(신규 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시에는 작업 투입 전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과 같다.

제2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직무 수행으로 현업업무 근로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직 종사자를 제외한 현업업무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과 같다.

제26조(특별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직 종사자를 제외한 현업업무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은 최초 작업에 근무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시기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6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선임 후 3개월 이내 34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24시간 이상

③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기록·보존)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교육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30조(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장 내 안전관리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전 부서에 알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방호조치) ①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영 제70조에 따라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제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 결과 교부받은 검사확인증은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은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3조(안전인증)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는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기계·기구·설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위험물질의 보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의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작업지휘자의 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9조제1항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조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3. 안전교육훈련
4.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 수립
5.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순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고 수시로 순찰한다.

제39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차량의 점검정비 적정 여부

6.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 및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41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사용부서의 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을 시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 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2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수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군이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수칙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 건강 체조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44조(유해요인조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이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새로운 사업인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시간·작업 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2.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직원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유해요인 조사 시 관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직원과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관리감독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관리요령을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유해요인발생 부서의 보건수칙) 유해 요인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보건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법 제1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른 질병 등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 또는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9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한다.

제50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 및 영 제41조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1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

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 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69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고조사 업무 담당자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휴게시설 설치·운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기준은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제53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54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군수는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관련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5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군수는 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영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6조(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군수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법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발주 공사시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7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9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에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사고원인,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응급조치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발생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석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0조(재해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된 재해의 원인을 찾고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매년 사고 및 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석결과 및 예방대책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장 위험성평가

제61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

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평가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62조(위험성평가 실시시기) ①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 실시

2.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3. 수시평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가.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한 경우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3조(위험성평가 절차) ①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업무 내용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64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65조(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 최소 보존기한은 제62조에 따른 실시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장 보칙

제66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67조(문서기록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법 제164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른 서류는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68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69조(안전·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111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하 동 군 수

대피명령 발령 공고

1. 대피명령 발령 개요
   가. 발령일시 : 2023년 08월 09일 11:30 ~ 대피명령 해제 시까지
   나. 발령지역 : 하동군 전역
   다. 대피대상 : 발령지역에 있는 주민 및 자동차, 선박 등
   라. 발령사유 :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피해 예방

2. 대피장소 : 인근 마을회관, 학교, 보건지소, 읍·면사무소 등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1126호

하동군 공고 제2023-1117호에 따른 대피명령이 다음과 같이 전부 해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하 동 군 수

대피명령 전부 해제 공고

1. 대피명령 해제지역
   가. 해제일시: 2023년 8월 10일 16:30 ~
   나. 해제지역: 하동군 전역

2. 효력발생시기: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하동군 금남면 공고 제2023 - 27호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모집 공고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일

금 남 면 장

1 채 용 내 용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1명	금남면 산업경제 부서	◦ **농지이용 실태조사 업무 보조** - 농지이용 실태조사(농지법, 농지원부, 농지대장 등) 각종 민원 응대 및 현장조사, 농지처분 사후관리 등 ◦ **그 외 기타 산업경제계 업무 보조**	2023. 9. . ~ 2023. 12. .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

※ 원서접수 응시 인원 및 농지관련 업무일정에 따라 근무기간 조정 가능

2 응 시 자 격

○ 성 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차량 등 이동수단을 가진 자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 우대조건

- 전산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소지자 및 유경험자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자(인터넷 지적도 등의 활용이 용이한 자)

3 임금 및 근로조건

○ 보 수 : 일급 76,960원/인/일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적용)

※ 4대보험가입 :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임금에서 공제

○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주·월차수당 지급)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4 채 용 방 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실시)

5 공고 및 원서접수

○ 기 간 : **2023. 8. 23.(수) ~ 2023. 8. 31.(목)**

○ 접 수 처 : 금남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055-880-621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방문제출 (우편 접수 불가)**

6 시 험 일 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9. 1. (금) - 개별통지**

○ 면접시험(인원초과 시) : **2023. 9. 5. (화) - 일정 변경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9. 6. (수) - 개별통지**

※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와 근무 기간 변동 가능

7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붙임),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붙임) 각 1부.

○ 이력서 1부(붙임 양식 / 사진 첨부, 연락처, 본인 서명 필요)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 전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8 기 타 사 항

○ 응시 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남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055-880-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앞, 뒷면)
2. 이력서 1부.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5.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1부.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기간제 근로자(산업경제부서 행정사무보조)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금남면장 귀하

주 소	(전 화 :) (휴대폰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	
소지자격증		
경 력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 번 호	~	

응 시 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 번 호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나.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다.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마.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2023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바.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아. 기 타 :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 2)

이 력 서

※응시 번호		응시분야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사 진 (3.5cm×4.5cm)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학 력					

	관계	성명	나이	관계	성명	나이
가 족 사 항						

신체 조건	키		체중		시력	

	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자격 면허							

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사무	발 령 청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작성자 : (서명)

금남면장 귀하

(붙임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에 밝혀질 시,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3년 월 일

위 확인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붙임 4)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하동군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이메일,경력·자격사항	채용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채용 종료 후 3년 까지

※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채용절차 진행	채용 종료 후 3년 까지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채용에 필요한 업무 외에 따로 이용되지 아니 합니다.

2023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중

(붙임 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